

문화예술창업보육센터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학의 지식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여건이 취약한 교내외의(예비)창업자를 발굴 육성하여 기술·지식집약형 창업을 촉진함으로써,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예원예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창업보육(센터)"이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1년 미만의 창업자(또는 업체)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비, 기술개발 및 경영지도, 기타의 행정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(장)을 말한다.
2. "보육닥터"라 함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입주자(입주업체)에 대한 기술개발 및 경영지도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한다.
3. "입주자 또는 입주업체"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설치된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창업자(업체),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동아리를 말한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창업아이템 발굴 및 창업지원
2. 창업보육에 필요한 각종 경영자문 및 교육훈련
3. 창업자에 대한 기술 및 정보 제공
4. 창업보육에 관련된 학술·세미나 개최 및 지원
5.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수행

제4조(조직 및 구성) 창업보육센터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둔다.
2. 보육센터소장과 운영위원회 및 행정지원실, 경영지원실, 기술지원실, 교육훈련실을 둘 수 있다.
3. 센터 운영세부규칙은 따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제5조(직무 및 임기)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조직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센터소장은 센터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.
2.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한다.
3. 행정지원실은 센터의 관리운영 및 행정지원을 담당한다.
4. 경영지원실은 입주업체 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업무를 담당한다.
5. 기술지원실은 입주업체의 애로기술상담 및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담당한다.
6. 교육훈련실은 입주업체 및 대학내 창업예비자에 대한 창업실무교육을 담당한다.
7. 임원 및 전담매니저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센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2. 위원은 우리대학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3.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4. 전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5.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가.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
 - 나.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
 - 다. 예산 및 결산

라. 센터의 입주업체의 선정, 사업진행 및 졸업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마.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

제7조(보육전담매니저, 센터전담교수) ① 센터에는 보육전담매니저, 센터전담교수 및 전담조교(1인 이상)를 둘 수 있다.

② 보육전담매니저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전담교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제3조 각 호에 명시된 사업업무를 전담한다.

③ 센터전담교수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입주대상) ① 입주자격은 창업 희망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업체(개인·단체·교수·졸업생·재학생·창업동아리)로 한다.

② 입주대상의 지리적 우대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지역소재 입주희망자를 우대한다.

③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다.

1. 기술 및 지식 집약형 창업 희망자(업체)
2. 보유 신기술 및 고유 아이디어 사업화 희망자(업체)
3.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12조 해당 업무 창업 희망자(업체)
4. 기타 당 센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구비한 자

제9조(입주업체 선정) ① 입주운영위원회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(업체)가 당 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졸업 후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대상을 선정한다.

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심사로 한다.

제10조(보육기간) 보육기간은 6개월 이상 2년이내로 한다. 2년의 보육기간이 만료된 후 필요한 때에는 1회(1년)에 한하여 보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의 이용) ① 센터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센터는 입주자(업체)의 시설·장비의 공동 활용을 최대한 지원한다.

제12조(기술·경영지원) ① 센터는 입주업체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TI(기술 보육) 및 BI(사업보육)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,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·경영지원에 관한 사항, 기타 시제품 생산 및 지적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세부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③ 센터는 입주업체의 졸업 후 지원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. 특히 유망업체에 대한 자금조달 및 마케팅, 기술력 향상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④ 입주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보육닥터의 지도 하에 성공적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13조(창업동아리 운영) ① 대학생들의 창업유도 등 사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창업동아리를 두어, 현장실습의 장으로 운영한다.

②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세부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제14조(입주자 수칙)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이 제공하는 시설·장비·예산 등 일체의 자원은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② 시설·장비 등의 자원배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센터 결정에 따른다. 다만, 센터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입주자(업체)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입주자(업체)는 센터가 제공하는 시설에 입주한 선량한 당사자로서 센터의 제규정을 준수하고, 보육닥터의 지도방침에 따라 연구·개발에 전념하는 가운데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

를 지닌다.

④ 입주자의 교내 출입과 이동, 시설·장비의 이용 기타 본사업과 관련한 관리·운영상의 제반 사항은 본 센터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퇴출) ① 입주자(업체)가 선량한 입주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, 입주자(업체)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경우, 센터는 보육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동의 없이 퇴출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전 항의 경우 센터는 퇴출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(업체)에게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
제16조(보상의무) 입주자(업체)는 예원예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지며, 그 보상의무에 대한 세부내역은 입주계약서에 의한다.

제17조(기타)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내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, 본 센터에서 이를 따로 정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12. 2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